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9.15(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안건현황	4
1. 회계구분	4
2. 심사경과	4
II. 추경예산안 규모	5
1. 총괄개요	5
2. 세입예산안	6
3. 세출예산안	7
가. 기능별	7
나. 조직별	8
다. 성질별	9
4.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10
가. 기금예산 규모	10
나. 개별기금 조성규모	11
다. 융자금 현황	12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13
1. 제안경위	13
2. 재정여건 및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13
3.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	14
4. 세입예산	15
가. 세입 총괄	15
나. 지방세	17

다. 세외수입	23
라. 지방교부세	27
마. 보조금	30
바. 지방채	32
사.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

5. 세출예산 46

가. 기능별(분야별)	46
나. 조직별	52
다. 성질별	53
라.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	62
마.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 주요사업	67
바. 계속비 사업	70
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3
아. 예비비	75

참고자료

붙임1.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검토	77
붙임2. 송도 6·8공구 매각(토지 리턴제) 관련 검토	84

IV. 심사결과 87

1. 중점심사내용	87
2. 토론요지	89
3. 심사결과	89
4. 소수의견	93
5. 기타사항	93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8. 13.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9. 4.

라. 상정일자 : 2014. 9. 11.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박 준 하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추경예산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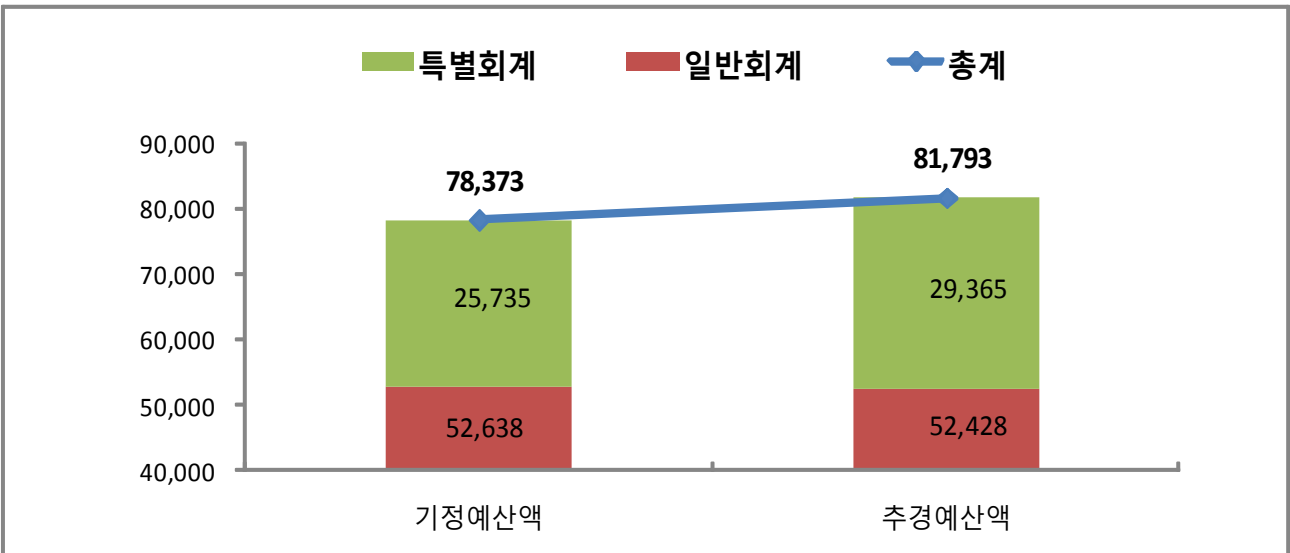
1. 총괄개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8,179,294,579	7,837,281,742	342,012,837	4.4
일반회계	5,242,783,530	5,263,812,161	△21,028,631	△0.4
특별회계	2,936,511,049	2,573,469,581	363,041,468	14.1
공기업특별회계	1,614,023,276	1,240,764,000	373,259,276	30.1
기타특별회계	1,322,487,773	1,332,705,581	△10,217,808	△0.8

<예산안 총규모 증감 비교>

(단위 : 억원)



2.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총 계	8,179,294,579	7,837,281,742	342,012,837	4.4
지 방 세	2,563,929,000	2,450,223,000	113,706,000	4.6
보 통 세	2,056,218,000	1,922,393,000	133,825,000	7.0
목 적 세	326,587,000	337,906,000	△11,319,000	△3.3
지 난 년 도 수 입	181,124,000	189,924,000	△8,800,000	△4.6
세 외 수 입	1,457,241,475	1,649,617,010	△192,375,535	△11.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84,088,247	687,509,974	96,578,273	14.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73,153,228	962,107,036	△288,953,808	△30.0
지 방 교 부 세	305,582,120	321,194,221	△15,612,101	△4.9
보 조 금	1,783,686,221	1,758,954,260	24,731,961	1.4
국 고 보 조 금	1,540,440,952	1,541,727,980	△1,287,028	△0.1
광역·지역발전특별	113,887,886	113,528,049	359,837	0.3
기 금	129,357,383	103,698,231	25,659,152	24.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43,874,582	841,160,440	△97,285,858	△11.6
차 입 금	165,000,000	195,000,000	△30,000,000	△15.4
지 방 채 증 권	578,874,582	646,160,440	△67,285,858	△10.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4,981,181	816,132,811	508,848,370	62.3
보 전 수 입 등	375,148,341	118,310,595	256,837,746	217.1
내 부 거 래	949,832,840	697,822,216	252,010,624	36.1

3. 세출예산안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179,294,579	7,837,281,742	342,012,837	4.4
일 반 공 공 행 정	1,331,058,927	1,065,782,380	265,276,547	24.9
공 공 질 서 및 안 전	31,732,052	31,416,971	315,081	1.0
교 육	549,575,666	522,593,357	26,982,309	5.2
문 화 및 관 광	708,508,016	752,695,445	△44,187,429	△5.9
환 경 보 호	580,831,646	518,691,332	62,140,314	12.0
사 회 복 지	1,876,601,206	1,857,993,541	18,607,665	1.0
보 건	100,141,432	100,561,347	△419,915	△0.4
농 립 해 양 수 산	95,969,259	148,887,270	△52,918,011	△35.5
산 업 · 중 소 기 업	98,464,179	99,815,236	△1,351,057	△1.4
수 송 및 교 통	1,237,118,766	1,274,362,995	△37,244,229	△2.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008,270,568	884,227,069	124,043,499	14.0
과 학 기 술	40,966,803	40,699,543	267,260	0.7
예 비 비	24,566,567	55,039,717	△30,473,150	△55.4
기 타	495,489,492	484,515,539	10,973,953	2.3

나. 조직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179,294,579	7,837,281,742	342,012,837	4.4
의 회 사 무 처	11,452,921	11,677,126	△224,205	△1.9
대 변 인 실	9,800,713	10,977,526	△1,176,813	△10.7
감 사 관 실	403,105	441,528	△38,423	8.7
교 육 기 획 관 실	553,061,248	526,083,717	26,977,531	5.1
도 시 디 자 인 추 진 단	3,656,824	4,042,642	△385,818	△9.5
규 제 개 혁 추 진 단	45,197	16,803	23,394	169.0
국 제 협 력 관 실	7,923,453	9,207,708	△1,284,255	△13.9
소 통 기 획 관 실	219,365	288,749	△69,384	△24.0
기 획 관 리 실	1,338,229,996	1,086,629,330	251,600,666	23.2
경 제 수 도 추 진 본 부	220,364,304	274,719,399	△54,355,095	△19.8
안 전 행 정 국	171,454,775	179,023,879	△7,569,104	△4.2
보 건 복 지 국	888,956,152	878,156,984	10,799,168	1.2
여 성 가 족 국	1,046,196,807	1,010,890,924	35,305,883	3.5
건 설 교 통 국	659,574,546	701,244,535	△41,669,989	△5.9
문 화 관 광 체 육 국	167,501,762	162,720,800	4,780,962	2.9
도 시 계 획 국	222,529,471	190,660,579	31,868,892	16.7
환 경 녹 지 국	386,670,203	359,388,139	27,282,064	7.6
항 만 공 항 해 양 국	190,925,046	190,506,619	418,427	0.2
아 시 아 경 기 지 원 본 부	512,550,598	559,671,456	△47,120,858	△8.4
소 방 안 전 본 부	43,356,506	40,304,535	3,051,971	7.6
12 개 직 속 기 관	154,272,807	155,751,889	△1,479,082	△0.9
18 개 사 업 소	951,428,200	903,230,913	48,197,287	5.3
경 제 자 유 구 역 청	638,720,580	581,645,962	57,074,618	9.8

다.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8,179,294,579	100	7,837,281,742	100	342,012,837	4.4
인 건 비	369,920,429	4.5	359,302,493	4.6	10,617,936	3.0
물 건 비	226,016,793	2.8	232,443,739	3.0	△6,426,946	△2.8
경 상 이 전	3,556,175,468	43.5	3,425,847,844	43.7	130,327,624	3.8
자 본 지 출	1,822,553,358	22.3	1,938,513,392	24.7	△115,960,034	△6.0
용자 및 출자	289,139,000	3.5	85,794,000	1.1	203,345,000	237.0
보 전 재 원	696,898,615	8.5	696,898,615	8.9	0	0.0
내 부 거 래	969,655,824	11.9	968,801,940	12.4	853,884	0.1
예비비 및 기타	248,935,092	3.0	129,679,719	1.7	119,255,373	92.0

4.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가. 기금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경정액①	기정액②	증감(①-②)	비고
총 계	521,132,440	478,857,897	42,274,543	
	(378,574,928)	(336,300,385)	(42,274,543)	
통합관리기금	142,557,512	142,557,512	0	
남북교류협력기금	3,854,272	3,854,272	0	
시립대학발전기금	10,705,827	10,705,827	0	
지방채상환기금	89,480,062	47,205,519	42,274,543	기정액 대비 89% 증
중소기업육성기금	110,851,585	110,851,585	0	
에너지사업기금	23,483,847	23,483,847	0	
농어촌진흥기금	12,953,263	12,953,263	0	
지방세발전기금	341,967	341,967	0	
사회복지기금	9,729,426	9,729,426	0	
식품진흥기금	8,063,013	8,063,013	0	
여성발전기금	4,123,859	4,123,859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6,308,597	26,308,597	0	
재난관리기금	46,261,522	46,261,522	0	
재해구호기금	32,417,688	32,417,688	0	

※ ()안 통합기금제의 시 합계, 기정액은 2014년 8월 현재 현액기준

나. 개별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현재액 ㉑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현재액 ㉒=㉑+㉓-㉔	증 감 ㉕ - ㉑
		수입 ㉓	지출 ㉔		
총 계	350,188,306	170,944,134	284,928,291	236,204,149	△113,984,157
	(260,341,722)	(118,233,206)	(186,177,796)	(192,397,132)	(△67,944,590)
통 합 관 리 기 금	89,846,584	52,710,928	98,750,495	43,807,017	△46,039,567
남북교류협력기금	2,918,521	935,751	3,214,800	639,472	△2,279,049
시립대학발전기금	10,444,710	261,117	0	10,705,827	261,117
지 방 채 상 환 기 금	44,624,830	44,855,232	82,000,000	7,480,062	△37,144,768
중소기업육성기금	48,185,654	62,665,931	84,250,000	26,601,585	△21,584,069
에 너 지 사 업 기 금	20,461,589	3,022,258	5,000,000	18,483,847	△1,977,742
농 어 촌 진 흥 기 금	12,051,427	901,836	725,070	12,228,193	176,766
지 방 세 발 전 기 금	48,215	293,752	341,967	0	△48,215
사 회 복 지 기 금	9,350,427	378,999	570,000	9,159,426	△191,001
식 품 진 흥 기 금	6,410,613	1,652,400	2,178,670	5,884,343	△526,270
여 성 발 전 기 금	4,025,619	98,240	90,000	4,033,859	8,240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25,453,069	855,528	807,289	25,501,308	48,239
재 난 관 리 기 금	44,749,360	1,512,162	5,000,000	41,261,522	△3,487,838
재 해 구 호 기 금	31,617,688	800,000	2,000,000	30,417,688	△1,200,000

다. 용자금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현재액 ㉑	'14년도 기금운용		'14년도말 현재액 ㉒=㉑-㉓+㉔	증 감 ㉕ - ㉑
		수입 ㉓	지출 ㉔		
총 계	265,493,514	114,730,111	126,900,000	277,663,403	12,169,889
	(125,860,261)	(75,546,778)	(89,900,000)	(140,213,483)	(14,353,222)
통 합 관 리 기 금	139,633,253	39,183,333	37,000,000	137,449,920	△2,183,333
지 방 채 상 환 기 금	17,240,000	17,240,000	0	0	△17,240,000
사 회 복 지 기 금	327,000	0	300,000	627,000	300,000
식 품 진 흥 기 금	630,759	366,000	600,000	864,759	234,00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7,451,329	55,720,481	84,000,000	125,730,848	28,279,519
에 너 지 사 업 기 금	10,147,950	2,217,297	5,000,000	12,930,653	2,782,703
농 어 촌 진 흥 기 금	63,223	3,000	0	60,223	△3,000

1. 제안 경위

-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포함)」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014년 8월 13일 제출된 후,
- 2014년 8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재정여건 및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지연으로 다소 큰 폭의 세외수입 결손이 예상되는 한편
- 영종도의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등 개발 호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리스·렌트차량 등록 유치 등으로 인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출분야에서는 2014년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사업비와 더불어 AG·APG, 장애인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급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 대신 기존사업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7조 8,373억원 대비 4.4%,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 규모임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2,638억원 대비 0.4% 210억원이 감소된 5조 2,428억원 규모임
-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5,735억원 대비 14.1% 3,630억원 대 폭 증가된 2조 9,365억원 규모로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0.8% 102억원이 감소한 1조 3,225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조 2,408억원에서 다소 큰 폭인 30.1% 3,732억원이 증가한 1조 6,140억원으로 편성됨

< 추경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증감율
계	8,179,295	100.0	7,837,282	100.0	342,013	4.4
일반회계	5,242,784	64.1	5,263,812	67.2	△21,029	△0.4
특별회계	2,936,511	35.9	2,573,470	32.8	363,041	14.1
공기업특별회계	1,614,023	19.7	1,240,764	15.8	373,259	30.1
기타특별회계	1,322,488	16.2	1,332,706	17.0	△10,21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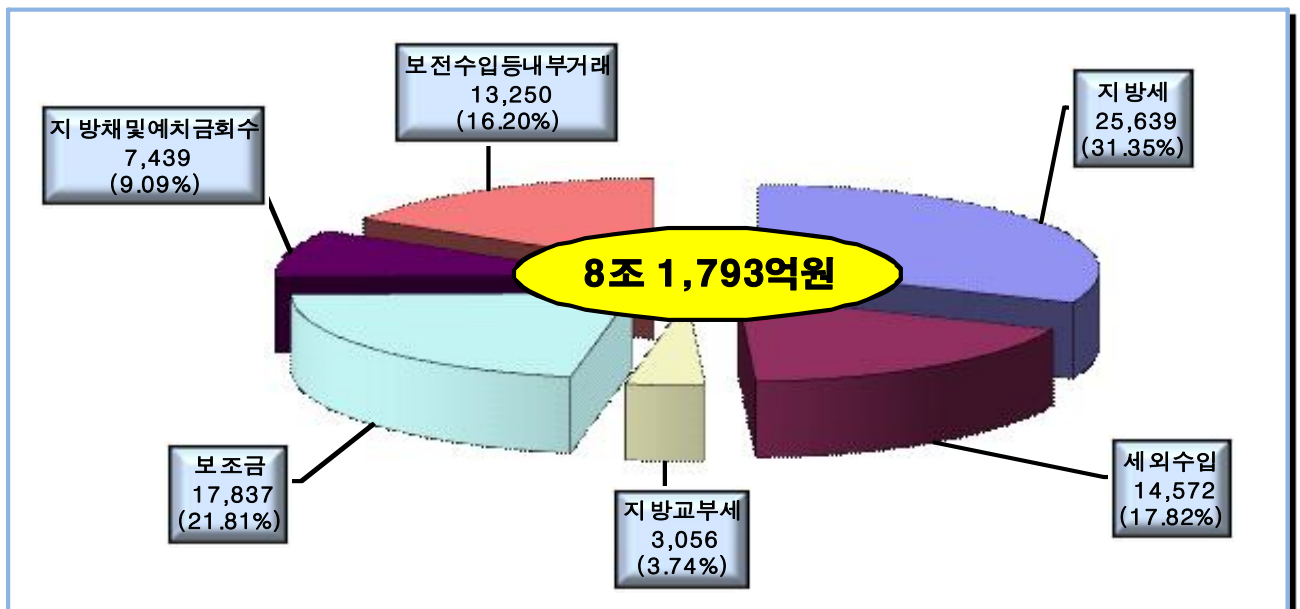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 할수 있음 - 이하 같음

4. 세입예산

가. 세입 총괄

- 세입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조 5,639억원으로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당초 21%에서 17.8%로 비중이 축소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은 기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2.4%에서 21.8%로 소폭 감소함.
-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지방채 발행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973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세입중 10.7%에서 9.1%로 소폭 감소한 반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채 발행을 대체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의 증가로 5,088억원이 증가하여 당초 10.4% 수준에서 16.2%로 대폭 증가함

(단위 : 억원)



< 세입예산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8,179,295	100.0	7,837,282	100.0	342,013	4.4
지 방 세	2,563,929	31.3	2,450,223	31.3	113,706	4.6
보 통 세	2,056,218	25.1	1,922,393	24.5	133,825	7.0
목 적 세	326,587	4.0	337,906	4.3	△11,319	△3.3
지 난 년 도 수 입	181,124	2.2	189,924	2.4	△8,800	△4.6
세 외 수 입	1,457,241	17.8	1,649,617	21.0	△192,376	△11.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84,088	9.6	687,510	8.8	96,578	14.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73,153	8.2	962,107	12.3	△288,954	△30.0
지 방 교 부 세	305,582	3.7	321,194	4.1	△15,612	△4.9
보 조 금	1,783,686	21.8	1,758,954	22.4	24,732	1.4
국 고 보 조 금	1,540,441	18.8	1,541,728	19.7	△1,287	△0.1
광역·지역발전특별	113,888	1.4	113,528	1.4	360	0.3
기 금	129,357	1.6	103,698	1.3	25,659	24.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43,875	9.1	841,160	10.7	△97,286	△11.6
차 입 금	165,000	2.0	195,000	2.5	△30,000	△15.4
지 방 채 증 권	578,875	7.1	646,160	8.2	△67,286	△10.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4,981	16.2	816,133	10.4	508,848	62.3
보 전 수 입 등	375,148	4.6	118,311	1.5	256,838	217.1
내 부 거 래	949,833	11.6	697,822	8.9	252,011	36.1

나.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 1,137억원이 증가한 2조 5,639억원으로
-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6.5% 539억원, 자동차세 6.6% 237억원, 지방소비세 23.7% 530억원, 지방소득세 4.7% 153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 반면 담배소비세 △8.1% 121억원, 지방교육세 △4.1% 113억원, 지난년도수입 △4.6% 88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계	2,563,929	100.0	2,450,223	100.0	113,706	4.6
보통세	2,056,218	80.2	1,922,393	78.5	133,825	7.0
취득세	889,767	34.7	835,818	34.1	53,949	6.5
등록면허세	3,140	0.1	3,140	0.1	0	0.0
주민세	9,381	0.4	9,381	0.4	0	0.0
재산세	45	0.0	0	0.0	45	순증
자동차세	379,715	14.8	356,056	14.5	23,659	6.6
레저세	21,537	0.8	21,537	0.9	0	0.0
담배소비세	136,884	5.3	149,008	6.1	△12,124	△8.1
지방소비세	276,600	10.8	223,596	9.1	53,004	23.7
지방소득세	339,149	13.2	323,857	13.2	15,292	4.7
목적세	326,587	12.7	337,906	13.8	△11,319	△3.3
지역자원시설세	59,997	2.3	59,997	2.4	0	0.0
지방교육세	266,590	10.4	277,909	11.3	△11,319	△4.1
지난년도수입	181,124	7.1	189,924	7.8	△8,800	△4.6

1) 취득세

- 우리시 지방세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 영종도의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등 지역적 개발 호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소 회복되고 있고, 아울러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¹⁾을 낮춰 리스·렌트차량의 적극적인 등록 유치로 기존 8,358억원보다 6.5% 539억원 증가한 8,898억원 편성하였으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유재산 매각 지연이 예상되는 등 큰 폭의 세외수입 결손을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차량 취득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취득세 징수 추이 및 향후 전망 등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경우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시 관련 조례²⁾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주변 타시도 보다 낮아 등록차량의 증가로 당초 3,561억원 규모에서 6.6% 237억원 증가한 3,797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는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점인 2013.12월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142,351대에서 2014.7월 1,209,648대로 5.9% 67,297천대가 증가하였는데,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2,000cc초과 기준)

▶ 인천 : 취득세과표의 5/100 ▶ 서울 : 취득세과표의 20/100 ▶ 경기도 : 취득세과표의 12/100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이중 영업용 자동차의 증가가 158,436대에서 17.6% 27,963대가 증가한 186,399대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세 증가폭인 6.6% 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까지 징수추이 및 세수추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동차 등록 현황³⁾ 및 자동차세 변동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4.7월	2013.12월	증 감	증감율
자동차 등록대수	1,209,648	1,142,351	67,297	5.9
관 용	3,208	3,145	63	2.0
자 가 용	1,020,041	980,770	39,271	4.0
영 업 용	186,399	158,436	27,963	17.6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자동차세	379,715	356,056	23,659	6.6

3)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당초 2,236억원에서 다소 큰 폭인 23.7% 530억원이 증가한 2,76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의 5%이던 것이 지난 2013.12.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1%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3)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 최근 경기침체는 물론, 세월호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 징수 현황과 이에 따른 증가폭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담배소비세

- 반면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 확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최근 수년간 흡연율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기존 예산액 1,490억원에서 △8.1% 121억원이 감소한 1,369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5) 지방교육세

- 한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150조4」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시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로써
-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담배소비세는 △8.1% 121억원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는 6.5% 539억원, 자동차세는 6.6% 237억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 당초 2,779억원에서 △4.1% 113억원이 감소한 2,66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교육세 감소사유와 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6)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징수가 이월된 수입으로
- 당초 1,899억원에서 △4.6% 88억원이 감소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편성된 체납정리 목표액보다 감소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금번 추경에 편성된 1,811억원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당해연도 지방세와 지난년도 수입중 미수납된 3,086억원의 58.7%에 불과한 수준으로 심각한 세입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지난년도 수입 1,811억원중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주)DCRE 체납분 1,689억원을 제외하면 12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2014년도의 체납액으로 넘어온 1,397억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난년도 수입의 결산액대비 예산액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회계연도 결산액 (다음년도 이월액)			2014년도 예산액 (지난년도 수입)		비고
	계	당해연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기정	추경	
결 산 · 예 산 액	308,641	65,804	242,837	189,924 (61.5)	181,124 (58.7)	
(주)DCRE 체납분 1,689억원 제외시	139,741	65,804	73,937	21,024 (15.0)	12,224 (8.7)	

- **지난년도수입중 (주)DCRE에 부과된 취·등록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 현재 법원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어 체납액의 징수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 이에 대한 소송진행 사항, 징수 가능성, 시의 대응방안 및 미수납 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DCRE 지방세 과년도 수입 관련 추진 경과 >

- 2012. 4월 : (주)DCRE에 취·등록세 부과
- 2012. 5월 :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 청구
- 2013. 6월 :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 2013. 6 ~ : 부동산(70필지), 토지보상금 등 압류중
- 2013. 9월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165)
- 2014. 8. 22 : 5차 변론기일

다.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Delta 11.7\%$ 1,924억원이 감소한 1조 4,57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6,875억원에서 다소 큰폭인 14.0% 966억원이 증가한 7,8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재산매각수입이 주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9,621억원에서 $\Delta 30.0\%$ 2,890억원이 감소한 6,73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457,241	100.0	1,649,617	100.0	$\Delta 192,376$	$\Delta 11.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84,088	53.8	687,510	41.7	96,578	14.0
재 산 임 대 수 입	6,452	0.4	5,614	0.3	838	14.9
사 용 료 수 입	414,921	28.5	388,707	23.6	26,215	6.7
수 수 료 수 입	10,175	0.7	10,197	0.6	$\Delta 22$	0.2
사 업 수 입	337,078	23.1	268,419	16.3	68,660	25.6
징 수 교 부 금 수 입	4,963	0.3	4,963	0.3	0	0.0
이 자 수 입	10,498	0.7	9,610	0.6	888	9.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73,153	46.2	962,107	58.3	$\Delta 288,954$	$\Delta 30.0$
재 산 매 각 수 입	360,584	24.7	578,784	35.1	$\Delta 218,200$	$\Delta 37.7$
부 담 금	148,894	10.2	142,602	8.6	6,292	4.4
기 타 수 입	139,181	9.6	204,177	12.4	$\Delta 64,997$	$\Delta 31.8$
지 난 연 도 수 입	24,495	1.7	36,544	2.2	$\Delta 12,049$	$\Delta 33.0$

1) 사용료 수입

-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3,887억원에서 6.7% 262억원이 증가된 4,14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이는 하수처리비용의 원가 이하로 부과되던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3.12.30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25.7% 사용료가 인상되어 당초예산 1,154억원 대비 23.2% 267억원 증액된 1,421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수입

- 세외수입중 증가폭이 가장 큰 **사업수입**은 기정액 2,684억원에서 다소 큰 폭이 25.6% 687억원이 증가한 3,37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사업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각 사업수입은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의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62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용지매각,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매 계약금 등이 추가로 발생되어 증액 편성함

3) 재산매각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액 5,788억원에서 △37.7% 2,182억원을 감액한 3,606억원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 감액한 매각수입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대규모 공유재산의 매각이 지연됨에 기인하고 있음
- 일반회계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액 5,614억원중 △38.9% 2,182억원을 감액한 3,432억원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 지난 7월말 현재 전체예산규모의 0.4%인 25억원만 매각완료되는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
- 매각 대상별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 ① 북항배후부지(상업용지 1,139억원 + 준공업용지 746억원)는 한진 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변지역 환경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금년내 매각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증감액	증감율	
계	343,213	561,413	△218,200	△38.9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35억) 및 기타 시유재산 매각수입(338억 ⁵⁾)	37,304	37,304	0	0.0	회계과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 매각	113,904	113,904	0	0.0	회계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91,800	310,000	△218,200	△70.4	농축산유통과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 채납 토지	25,591	25,591	0	0.0	도로과
북항기부채납 준공업용지 매각	74,607	74,607	0	0.0	도시계획과
국민주택부지매각수입	6	6	0	0.0	건축계획과

- ②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918억원) 매각은 이전부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지연, 도매시장 규모관련 국토부 승인 지연 등으로 롯데쇼핑과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182억원(△70.4%) 감액하였으나 계약체결이 연내에 체결된다 해도 계약금액의 30%(918억원)를 금년에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시유재산 매각수입 338억원 내역 - 2014.7월 현재 25억원 매각 완료
 -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32필지 41억원
 - 소래·논현구역 10,769㎡ (약 3,262평) 197억원
 - 도시개발 사업등 손실보상 및 기타 재정매각 100억원

③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256억원)도 (주)한화 등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용지 활용이 연립주택 및 근생 용지로 제한되어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 시에서 전망하듯이 연내에 순조롭게 매각이 완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각 가능성, 미매각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별임I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검토 참조(P 77)**

4) 기타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도 기정예산액 2,042억원에서 △31.8% 650억원 대폭 감액된 1,39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감소함에 따라 당초 지방소비세 보전분으로 편성한 1,551억원을 전액 삭감되었는데 당초 과다 계상했던 사항인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타시도에 비해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12~20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금 557억원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LH로부터의 보상금 314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적정규모인지 및 연내 징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지방교부세

-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편차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존재원으로
-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 3,212억원에서 $\Delta 4.9\%$ 156억원이 감소한 3,05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통교부세는 $\Delta 11.8\%$ 감소한 2,33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각각 283.5%, 24.6%가 증가한 26억원과 692억원으로 편성됨

<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계	305,582	100.0	321,194	100.0	$\Delta 15,612$	$\Delta 4.9$
보 통 교 부 세	233,836	76.5	265,000	82.5	$\Delta 31,164$	$\Delta 11.8$
특 별 교 부 세	2,561	0.8	668	0.2	1,894	283.5
분 권 교 부 세	69,185	22.6	55,526	17.3	13,658	24.6

1) 보통교부세

- 보통교부세는 의존재원 임에도 사용목적이 국고보조금처럼 지정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에 맡겨져 있고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되는 일반재원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천시로서는 매우 유용한 재원임에도 높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2007년까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첫째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2014년 2,338억원으로 연평균 24.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아직도 인구수와 면적 등에서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규모임에도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인바,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광역시·도분 보통교부세 배분내역⁶⁾ >

(단위 : 억원 / %)

시도별	인구수 ⁷⁾ (천명)	면적 (km ²)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계	51,141	100,239	65,243	63,913	72,628	84,353	89,550	89,404	6.50
서울	10,144	605	-	-	-	-	-	-	-
부산	3,528	770	6,032	7,109	8,121	9,139	8,631	8,607	7.37
대구	2,502	884	4,578	4,925	6,262	7,490	8,072	8,017	11.86
인천	2,880	1,041	774	1,277	1,486	1,911	2,301	2,338	24.74
(구성비)	(5.63)	(1.04)	(1.19)	(2.00)	(2.05)	(2.27)	(2.57)	(2.62)	(17.13)
광주	1,473	501	4,275	4,170	4,990	5,341	5,488	5,458	5.01
대전	1,533	540	2,630	2,899	3,676	4,487	4,628	4,661	12.13
울산	1,156	1,060	1,177	951	1,043	1,158	1,174	817	△ 7.04
세종 ⁸⁾	122	465	-	-	-	-	1,591	1,846	16.03
경기	12,235	10,171	308	508	714	773	1,124	1,211	31.50
강원	1,542	16,781	4,733	4,623	5,169	6,300	6,567	6,700	7.20
충북	1,573	7,406	3,633	3,631	4,194	4,992	5,246	5,196	7.42
충남	2,048	8,192	4,080	4,065	4,581	5,490	5,634	5,498	6.15
전북	1,873	8,067	6,263	5,415	5,913	6,592	6,831	6,645	1.19
전남	1,907	12,255	7,775	6,856	7,438	8,507	8,771	8,633	2.12
경북	2,699	19,030	8,070	7,649	8,309	9,681	10,138	10,038	4.46
경남	3,334	10,534	3,688	2,862	3,002	3,737	3,927	4,172	2.50
제주 ⁹⁾	594	1,847	7,228	6,972	7,730	8,757	9,427	9,567	5.77

6) 재정고 참조 - 연도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당초 산정내역 기준)

7) 2013.12월말 현재 인구현황

8)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일 출범으로 2012년은 최종예산 기준, 2013년 이후는 당초예산 기준

9)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재정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정액으로 교부

2)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으로
- 당초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배 가까운 1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비 7억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5억원, 소규모 안전체험교육관 설치 5억원 및 소방장비 확충 15억원 등 최근 최대 현안사항인 안전분야에 추가 교부되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안전분야도 시급하지만 AG, APG 및 장애인전국체전 등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분권교부세

- 분권교부세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분권교부세는
- 556억원 규모에서 다소 큰 폭인 24.6% 137억원이 증가된 69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1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34억원 등 주로 복지분야에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마. 보조금

- 보조금은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 당초 1조 7,590억원에서 1.4% 247억원이 증가한 1조 7,837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0.1% 13억원이 감소된 1조 5,404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기금은 24.7% 257억원이 증가된 1,294억원으로 편성됨

< 보조금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계	1,783,686	100.0	1,758,954	100.0	24,732	1.4
국 고 보 조 금	1,540,441	86.4	1,541,728	87.7	△1,287	△0.1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3,888	6.4	113,528	6.5	360	0.3
기 금	129,357	7.3	103,698	5.9	25,659	24.7

1) 국고보조금

- 보조금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0.1% 소폭 감소하는 등 거의 변동이 없는데,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64억원 → 2,086억원 (증 122억원)
 - 로봇랜드 조성사업 130억원 → 165억원 (증 35억원)
 -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02억원 → 47억원 (△ 55억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103억원 → 53억원 (△ 50억원)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430억원 → 210억원 (△ 220억원)
 등이 증감되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따른 시비가 일정부분 수반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각부서에서 무계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보다는 관련 규칙에 규정된 ‘재정사항의 합의’ 제도¹⁰⁾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공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 1,135억원에서 0.3% 4억원이 증가한 1,139억원 규모로 거의 변동이 없음

3) 기금

- 한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기금은 기정액이 1,037억원에서 24.7% 257억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1,29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 필수예방접종사업 73억원 → 112억원 (증 39억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신규 13억원 (증 13억원)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10억원 (증 10억원)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416억원 → 553억원 (증 136억원)
 등이 있음
- 금번 추경에 반영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주변도로 건설비로 지원되는 기금의 경우 대회를 수일 남겨놓은 시점에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도로 사용이나 경기장 활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¹⁰⁾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9.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바. 지방채

- 지방채는 지자체가 주민복지의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는 지방채는
- 당초 8,412억원에서 다소 큰 규모인 △11.6% 973억원이 감소한 7,439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중 차입금은 △15.4% 300억원, 지방채증권은 △10.4% 673억원 각각 감액 편성함

< 지방채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계	743,875	100.0	841,160	100.0	△97,286	△11.6
차 입 금	165,000	22.2	195,000	23.2	△ 30,000	△15.4
정부자금채 ¹²⁾	15,000	2.0	15,000	2.8	0	0.0
금융기관채 ¹³⁾	140,000	18.8	170,000	20.2	△ 30,000	△17.6
지방공공자금채 ¹⁴⁾	10,000	1.3	10,000	1.2	0	0.0
지방채증권	578,875	77.8	646,160	76.8	△ 67,286	△10.4
모집공채 ¹⁵⁾	412,675	55.5	545,574	64.9	△ 132,900	△24.4
매출공채 ¹⁶⁾	166,200	22.3	100,586	12.0	65,614	65.2

11) 지방채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정부자금채 :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3) 금융기관채 : 일반 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4) 지방공공자금채 :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5) 모집공채 :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6) 매출공채 : 매출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지방채

1) 금융기관채

- 차입금중 금융기관채는 당초 1,700억원에서 △17.6% 300억원을 축소한 1,400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하였는데,
- 이는 당초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에 7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400억원만 차입하고 300억원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고금리 및 부채부담 등으로 금융기관채는 취소하고 여유가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송도 6·8공구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과의 토지리턴제에 의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교보증권의 토지리턴 권한 행사 가부 결정이 2015년 8월에 예정되어 있어
- 토지리턴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인지, 토지리턴제 행사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별임2 송도 6·8공구 매각(토지 리턴제) 관련 검토 참조(P 84)**

2) 모집공채

- 지방채증권중 모집공채는 기정예산액이 5,456억원에서 다소 높은 규모인 △24.4% 1,329억원을 축소하여 4,127억원으로 조정함
- 이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원금상환 일반차환을 위해 발행코자 했던 627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외 추가 발행키로 했던 697억원중 112억원만 발행하고 585억원은 감액하는 사항임

- 일반회계 일반차환 627억원 전액삭감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증가로 일반차환의 실익이 없어졌고
-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관련 지방채 발행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경기장 건설로 인한 관련¹⁷⁾법에 따라 시에서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면적이 최종 국토교통부 결정시 대폭 감소됨에 따라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여 훼손지 복구를 위한 토지를 구입코자 했던 사업이 축소되어 일부 미발행코자 하는 사항임
-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AG 준비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토록 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면적이 감소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 향후에도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3) 매출공채

- 매출공채는 기정예산액이 1,006억원에서 큰 폭인 65.2% 656억원이 증가된 1,662억원으로 편성함
- 매출공채중 도시철도채권은 지난 5월 15일 2014년도분 341억원 전액이 매출 완료되어 당초 편성되었던 341억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지역개발채권은 당초 665억원 규모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98.7% 656억원이 증가한 1,321억원으로 편성함
-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¹⁸⁾을 주변 시도에 비해 낮춰 리스·렌트차량의 우리시에서의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대폭 증가한 사항으로
- 특히 도시철도채권¹⁹⁾과 지역개발²⁰⁾채권의 발행이율은 2%로 통상 4%가 넘는 금융기관채보다 매우 낮아 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지속적인 유인책 발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8)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2,000cc초과 기준)

▶ 인천 : 취득세과표의 5/100 ▶ 서울 : 취득세과표의 20/100 ▶ 경기도 : 취득세과표의 12/100

1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2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사.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당초 8,161억원 규모에서 62.3% 5,088억원 대폭 증가한 1조 3,250억원으로 편성함
- 잉여금은 2배가 넘는 2,537억원이 증가한 3,71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예탁금및예수금도 2배 가까운 2,634억원이 증가한 4,112억원으로 편성한 반면, 전입금은 △2.1% 114억원이 감소한 5,386억원으로 조정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324,981	100.0	816,133	100.0	508,848	62.3
보 전 수 입 등	375,148	28.3	118,311	14.5	256,838	217.1
잉 여 금	371,548	28.0	117,897	14.4	253,651	215.1
전 년 도 이 월 금	3,190	0.2	1	0.0	3,189	303681.3
용 자 금 원 금 수 입	411	0.0	413	0.1	△2	△0.6
내 부 거 래	949,833	71.1	697,822	85.5	252,011	36.1
전 입 금	538,590	40.6	549,972	67.4	△11,382	△2.1
예 탁 금 및 예 수 금	411,243	31.0	147,850	18.1	263,393	178.1

1) 잉여금

- 보전수입중 잉여금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1,179억원보다 무려 215.1% 2,537억원이 증가된 3,715억원으로 편성됨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²¹⁾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차감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에 각각 1,610억원과 711억원 마이너스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8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 기정액이 53억원에서 15배가 넘는 833억원이 증가된 886억원으로 편성함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계	104,507	180,715	178,539	△87,818	27,505	223,592	5.5
일반회계	△25,444	2,685	13,587	△161,018	△71,125	88,649	139.7
특별회계	129,951	178,030	164,952	73,200	98,630	134,943	△6.7

21) 세계잉여금[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1.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therefore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결산상 잉여금을 의미함)
 \therefore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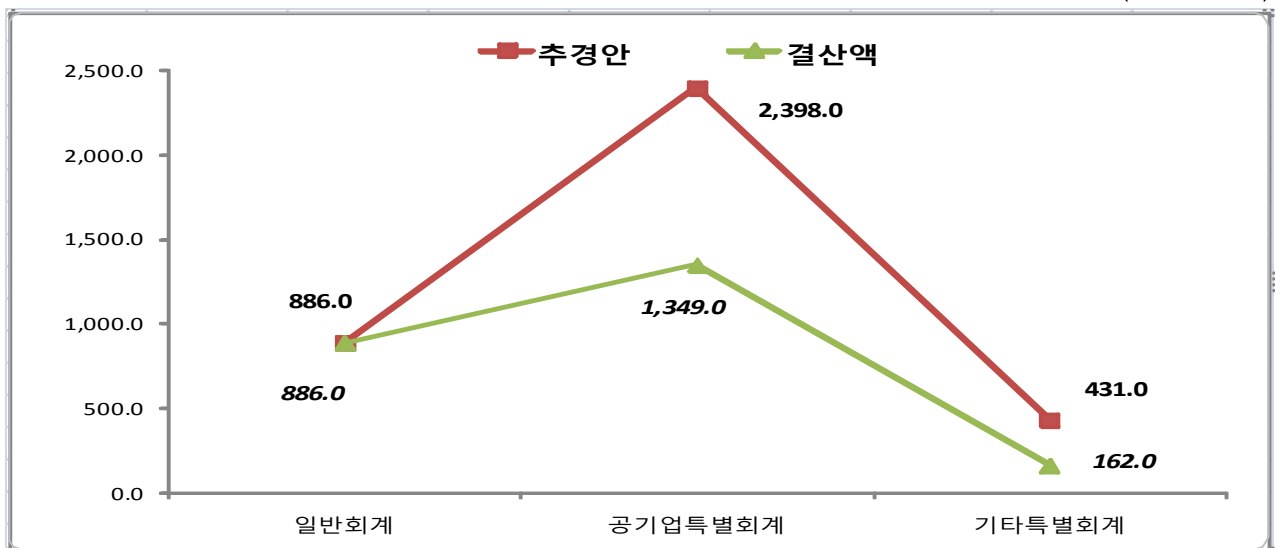
2.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

-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
 -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3.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가능

-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 1,126억원에서 151.3% 1,703억원 증가한 2,82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501억원 증가한 2,39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8.9% 증가한 431억원으로 편성됨
-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의 2013회계연도 결산상 1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에는 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잉여금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특별회계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는 2013회계연도 결산상 1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76.8% 9억원이 많은 21억원으로 편성되고, 검단1지구는 반대로 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다수의 특별회계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편성액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순세계잉여금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발생 현황 >

(단위 : %)



<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및 결산액 비교 >

(단위 : 박만원 / %)

회 계 별	2014년도 예산				2013회계연도 결산		
	추경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율	결산액 (C)	증감액 (A-C)	증감율
총 계	371,548	117,897	253,651	215.1	223,592	147,956	66.2
일 반 회 계	88,649	5,340	83,309	1560.2	88,649	0	0.0
특 별 회 계	282,899	112,558	170,342	151.3	134,943	147,956	109.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39,842	89,765	150,077	167.2	118,726	121,117	102.0
상 수 도 사 업	64,500	29,765	34,735	116.7	64,500	0	0.0
하 수 도 사 업	0	0	0	0.0	1,207	△1,207	△100.0
경 제 자 유 구 역 사 업	0	0	0	0.0	△122,324	122,324	△100.0
지 역 개 발 기 금	175,342	60,000	115,342	192.2	175,342	0	0.0
기 타 특 별 회 계	43,057	22,792	20,265	88.9	16,217	26,839	165.5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125	2,125	0	0.0	1,202	923	76.8
인 천 대 학 교 운 영 ²²⁾	0	0	0	0.0	10,300	△10,300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860	508	353	69.5	859	1	0.1
검 단 1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773	△773	△100.0
검 단 2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40,248	40,48	△100.0
원 당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3,350	3350	△100.0
당 하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20,323	△20,323	△100.0
오 류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10,539	10,539	△100.0
마 전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10,536	10,536	△100.0
불 로 지 구 구 획 정 리	0	0	0	0.0	581	△581	△100.0
도 시 교 통 사 업	7,797	2,000	5,797	289.8	7,797	0	0.0
광 역 교 통 시 설	13,419	3,000	10,419	347.3	13,419	0	0.0
도 시 철 도 사 업	4,696	1,000	3,696	369.4	4,696	0	0.0
도 시 개 발	3,500	3,500	0	0.0	10,500	△7,000	△66.7
장 기 미 집 행 대 지 보 상	124	124	0	0.0	277	△153	△55.2
기 반 시 설	1,800	1,800	0	0.0	2,104	△304	△14.4
지 하 도 상 가	8,736	8,736	0	0.0	8,866	△130	△1.5
아 시 아 경 기 대 회	0	0	0	0.0	△806	806	△100.0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1.18일 시행되어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되어 2014년부터는 특별회계 미편성

2)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이월금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후 남은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임

3) 전입금

- 내부거래중 전입금은 당초 편성액 5,500억원에서 △2.1% 114억원이 감소한 5,38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각각 408억원, 172억원, 147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이 841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임

<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계	538,590	100.0	549,972	100.0	△11,382	△2.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3,710	8.1	2,892	0.5	40,817	1411.3
기타회계전입금	380,640	70.7	464,758	84.5	△84,118	△18.1
기금전입금	28,140	5.2	10,900	2.0	17,240	158.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6,101	16.0	71,422	13.0	14,679	20.6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당초 29억원에서 14배가 넘는 408억원이 증가한 4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한 사항임

- 하지만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확대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체결²³⁾에 따른 미출연금 40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p97)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서 p530)에는 은행차입금 이자부담액 15.8억원(400억원 × 3.95%/년)만 계상하고 실제 출연금은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 400억원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회계간 내부거래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40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사유, (재)인천테크노파크 미출연 사유, 향후 출연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으로 당초 4,648억원에서 △18.1% 841억원이 감소한 3,806억원 규모로 편성됨
-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당초 940억원에서 313억원으로 627억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감소분 전액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²³⁾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체결(인천테크노파크, 경제청)
 - 일시 : 2013 4. 17 (합의자금 2,550억원 : 직접지급금 1,148억원 / 출연 1,402억원)
 - 추진경과('13.10~'14.2) :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출연(1,002억원 / 미출연금 400억원)
 ⇒ 경제수도추진본부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참조

- 기금전입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당초 109억원에서 158.2% 172억원이 증가한 28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채상환기금²⁴⁾에서 신규로 172억원이 일반회계²⁵⁾로 전·출입된 사항임

<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824,200	829,850	△5,649	△0.7
차입금이자상환	127,301	132,951	△5,649	△4.2
차입금원금상환	696,899	696,899	0	0.0
일반회계	239,776	242,760	△2,983	△1.2
차입금이자상환	40,190	43,174	△2,983	△6.9
차입금원금상환	199,586	199,586	0	0.0
특별회계	584,424	587,090	△2,666	△0.5
차입금이자상환	87,111	89,777	△2,666	△3.0
차입금원금상환	497,313	497,313	0	0.0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으로 당초 714억원 규모에서 20.6% 147억원 증가된 861억원으로 편성됨

24) 기타회계 전출금 :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p16(지방채상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72억원 전출)

25) 기금전입금 : 추경예산안 p62(지방채상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72억원 전입)

- 이는 만3세 ~ 만5세 아동들의 누리과정 운영경비가 당초 688억원에서 152억원 증가한 839억원으로 증가된 사항임
- 최근 시와 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으로 누리과정 운영비의 전·출입이 늦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절차 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예탁금및예수금

- 내부거래중 예탁금및예수금은 지정액이 1,479억원에서 2배에 가까운 178.1% 2,634억원이 증가한 4,112억원 규모로 편성함
- 이는 최근 리스·렌트차량의 증가에 따라 큰폭의 증가를 나타낸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예수금 수입이 당초보다 2,042억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당초 300억원 규모에서 680.5%가 증가한 2,34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용자사업으로는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17억원
 -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600억원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99억원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 300억원
 -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7억원
 - 도시철도 2호선 627억원 등임

- 이중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비 300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627억원은 당초 금융기관채 매입 및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려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예수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향후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내부거래중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당초 589억원보다 101.5% 598억원이 증가된 1,18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600억원의 인천도시공사에서의 용자금 조기상환이 이루어져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 도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있고 또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적자운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을 받고 있는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하면서 부족한 교육·연구 공간 부족으로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가 공사중단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600억원의 조기상환이 우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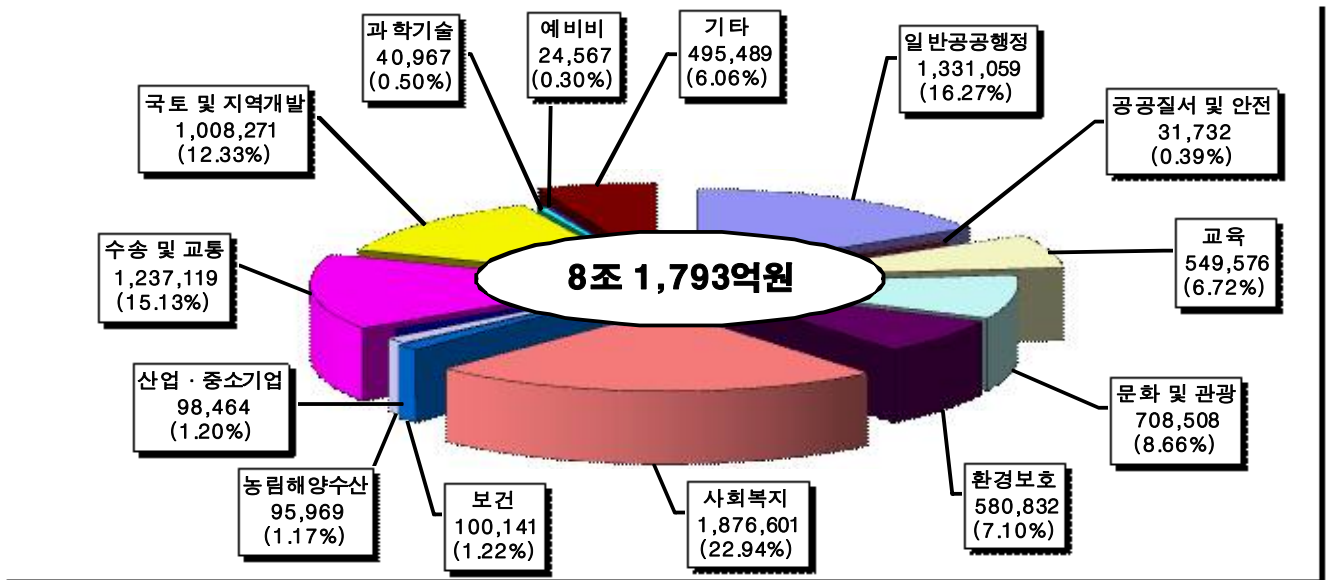
< 예탁금및예수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계	411,243	100.0	147,850	100.0	263,393	178.1
예 수 금 수 입	37,000	9.0	37,000	25.0	0	0.0
시도지역개발기금 예 수 금 수 입	234,152	56.9	30,000	20.3	204,152	680.5
예탁금원금회수 수	118,677	28.9	58,900	39.8	59,777	101.5
예탁금이자수입	21,414	5.2	21,950	14.8	△536	△2.4

5. 세출예산

가. 기능별(분야별)



(단위 : 백만원 / %)

구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8,179,295	100.0	7,837,282	100.0	342,013	4.4
일반공공행정	1,331,059	16.3	1,065,782	13.6	265,277	24.9
공공질서및안전	31,732	0.4	31,417	0.4	315	1.0
교육	549,576	6.7	522,593	6.7	26,982	5.2
문화 및 관광	708,508	8.7	752,695	9.6	△44,187	△5.9
환경 보호	580,832	7.1	518,691	6.6	62,140	12.0
사회 복지	1,876,601	22.9	1,857,994	23.7	18,608	1.0
보 건	100,141	1.2	100,561	1.3	△420	△0.4
농림해양수산	95,969	1.2	148,887	1.9	△52,918	△55.5
산업·중소기업	98,464	1.2	99,815	1.3	△1,351	△1.4
수송 및 교통	1,237,119	15.1	1,274,363	16.3	△37,244	△2.9
국토및지역개발	1,008,271	12.3	884,227	11.3	124,043	14.0
과 학 기 술	40,967	0.5	40,700	0.5	267	0.7
예 비 비	24,567	0.3	55,040	0.7	△30,473	△55.4
기 타	495,489	6.1	484,516	6.2	10,974	2.3

1) 일반공공행정분야

-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4.4% 3,420억원 증가된 8조 1,793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기금을 통한 용자금 사업등의 증가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9% 2,653억원 증가하면서 금번 제1회 추경 규모인 3,420억원의 대부분인 77.6%를 차지하고 있음

2) 교육분야

- **교육분야**는 과년도 취득세 보전분 등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09억원 증가로 기정액 5,226억원보다 5.2% 270억원이 증가된 5,496억원규모로 편성됨

3) 문화및관광분야

- 금년 9월과 10월에 AG와 APG를 앞두고 있어 체육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및관광분야는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정예산액 7,527억원에서 다소 큰 폭인 $\Delta 5.9\%$ 442억원이 감소한 7,08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에서는 당초보다 0.5% 16억원이 증가된 3,32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훼손지 복구 면적 감소로 특별회계에서 다소 큰 규모인 458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4) 환경분야

- 상·하수도 관리를 맞고 있는 **환경분야**는 2013회계연도에 347억 원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금년부터 사용료 현실화에 따라 사용료가 25.7% 인상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증가 등으로 당초보다 12.0% 621억원이 증가된 5,808억원 규모로 편성됨

5) 사회복지분야

- 매년 시 재정의 가장 큰 규모인 20%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 1조 8,580억원에서 1.0% 186억원이 증가된 1조 8,76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가 요인은 보육료 국비 부담분이 122억원 증액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만3에서 만5세아들의 누리과정 운영비가 152억원 증액에 따른 것임

6) 농림해양수산분야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 1,489억원에서 가장 큰 폭인 $\Delta 35.5\%$ 529억원이 감소한 960억원으로 편성됨
- 감소의 주된 원인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늦어짐에 따라 이전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보상도 2015년 이후로 연기되어 토지보상비 509억원 전액을 삭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7) 수송및교통분야

- 수송및교통분야는 당초 1조 2,744억원에서 △2.9% 372억원이 감소한 1조 2,371억원으로 편성됨
- 주된 감소 부문은 대부분 도로망 확충부문에
 -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122억원 → 31억원(△ 91억원)
 -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50억원 → 17억원(△ 33억원)
 -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143억원 → 5억원(△138억원)
 - 검단산업단지~검단 IC간 도로개설 50억원 → 5억원(△ 45억원)
 -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85억원 → 5억원(△ 80억원)
 -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30억원 → 7억원(△ 23억원)
 등 도로 신설, 확장 등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사항으로
- 심각한 재정난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대폭 조정함으로써 사료되나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교통정체, 주민불편, 민원발생 등 문제가 없는지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37,119	100.0	1,274,363	100.0	△37,244	△2.9
	도로	160,272	13.0	194,104	15.2	△33,832	△17.4
	도시철도	463,504	37.5	458,284	36.0	5,220	1.1
	대중교통기타	613,343	49.6	621,975	48.8	△8,632	△1.4

8) 국토및지역개발분야

- 일반공공행정분야 다음으로 큰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토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 8,842억원규모에서 14.0% 1,240억원이 증가된 1조 83억원으로 큰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변동요인으로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M2-2)²⁶⁾금 59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송도 5·7공구 '주상복합용지(재미동포타운)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납부분 반환금'으로 당초 계약현황, 해제사유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마련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예 어려움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증가사유로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과, 예산서 p673)에 신규로 772억원이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공사로의 사업비 출연의 시급성, 사업추진 현황, 미출연시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주거환경정책관실, 예산서 p670)의 경우 시 재정악화 및 사업추진이 미미하다는 이

2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 p39

유로 13개 사업에 사업비 323억원중 91.1%인 294억원을 삭감하고 3개사업에만 사업비의 일부인 29억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 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황 >

[2014. 7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

구 별	구 역 명	2014 본예산			추경 예산액	증감액		추진상황
		합 계	시비 (90%)	구비 (10%)		증감액	증감율	
계		36,971	32,273	4,698	2,861	△29,412	△91.1	
중 구	송월동 동화마을	2,375	2,138	237	2,138	0	0.0	공동시설 '14.9월 착공 예정
동 구	배다리	2,660	1,394	1,266	-	△1,394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남 구	학골마을	950	855	95	319	△537	△62.8	공공시설용지취득완료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석정마을	2,945	2,651	294	-	△2,651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제물포역 북부역	1,520	1,368	152	405	△963	△70.4	공공시설용지취득완료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연수구	농원마을	3,773	3,395	378	-	△3,395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청능마을	1,563	1,407	156	-	△1,407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남동구	간석자유 시장주변	2,090	1,881	209	-	△1,881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	4,085	3,677	408	-	△3,677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부평고교 주변	3,515	3,164	351	-	△3,164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계양구	계양문화 회관동측	3,610	3,249	361	-	△3,249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서 구	가정여중 주변	3,135	2,822	313	-	△2,822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신현동 회화나무골	4,750	4,275	475	-	△4,275	△100.0	정비계획수립용역중

나. 조직별

- 조직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변인실 △10.7%, 도시디자인추진단 △9.5%, 국제협력관실 △13.9%, 소통기획관실 △24.0%, 경제수도추진본부 △19.8% 및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8.4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 기획관리실 23.2%, 도시계획국 16.7%, 환경녹지국 7.6% 소방안전본부 7.6%, 경제자유구역청 9.8% 등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부서별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의무 절감 등으로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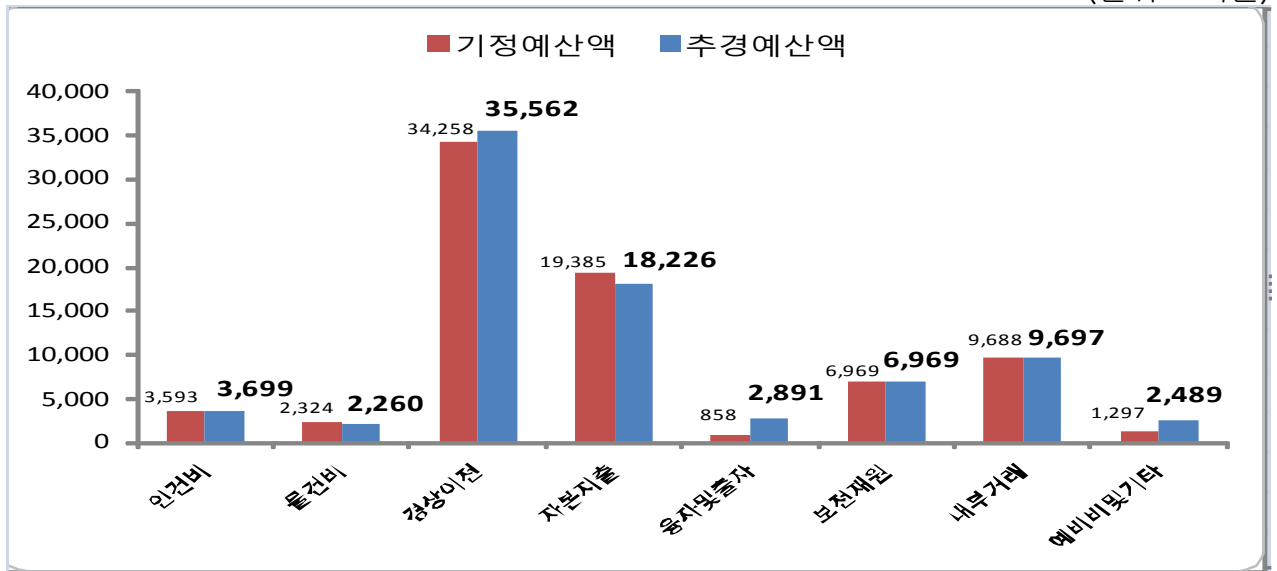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8,179,295	100.0	7,837,282	100.0	342,013	4.4
의회사무처	11,453	0.1	11,677	0.1	△224	△1.9
대변인실	9,801	0.1	10,978	0.1	△1,177	△10.7
감사관실	403	0.0	442	0.0	△38	8.7
교육기획관실	553,061	6.8	526,084	6.7	26,978	5.1
도시디자인추진단	3,657	0.0	4,043	0.1	△386	△9.5
규제개혁추진단	45	0.0	17	0.0	23	169.0
국제협력관실	7,923	0.1	9,208	0.1	△1,284	△13.9
소통기획관실	219	0.0	289	0.0	△69	△24.0
기획관리실	1,338,230	16.4	1,086,629	13.9	251,601	23.2
경제수도추진본부	220,364	2.7	274,719	3.5	△54,355	△19.8
안전행정국	171,455	2.1	179,024	2.3	△7,569	△4.2
보건복지국	888,956	10.9	878,157	11.2	10,799	1.2
여성가족국	1,046,197	12.8	1,010,891	12.9	35,306	3.5
건설교통국	659,575	8.1	701,245	8.9	△41,670	△5.9
문화관광체육국	167,502	2.0	162,721	2.1	4,781	2.9
도시계획국	222,529	2.7	190,661	2.4	31,869	16.7
환경녹지국	386,670	4.7	359,388	4.6	27,282	7.6
항만공항해양국	190,925	2.3	190,507	2.4	418	0.2
아시아경기지원본부	512,551	6.3	559,671	7.1	△47,121	△8.4
소방안전본부	43,357	0.5	40,305	0.5	3,052	7.6
12개 직속기관	154,273	1.9	155,752	2.0	△1,479	△0.9
18개 사업소	951,428	11.6	903,231	11.5	48,197	5.3
경제자유구역청	638,721	7.8	581,646	7.4	57,075	9.8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2.8%, 자본지출 △6.0% 감소한 반면, 인건비 3.0%, 경상이전 3.8%, 내부거래 0.1%로 다소 증가하였고, 용자 및 출자의 경우는 237.0%, 예비비및기타는 92.0%로 대폭 증가하였음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백만원 /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계	8,179,295	100.0	7,837,282	100.0	342,013	4.4
인건비	369,920	4.5	359,302	4.6	10,618	3.0
물건비	226,017	2.8	232,444	3.0	△6,427	△2.8
경상이전	3,556,175	43.5	3,425,848	43.7	130,328	3.8
자본지출	1,822,553	22.3	1,938,513	24.7	△115,960	△6.0
용자 및 출자	289,139	3.5	85,794	1.1	203,345	237.0
보전재원	696,899	8.5	696,899	8.9	0	0.0
내부거래	969,656	11.9	968,802	12.4	854	0.1
예비비 및 기타	248,935	3.0	129,680	1.7	119,255	92.0

1) 인건비

- 인천시 재정의 약 4.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당초 3,593억원 규모에서 3.0% 106억원 증가한 3,69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건비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로 향후에는 본예산 예산편성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물건비

-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당초대비 $\Delta 2.8\%$, 64억원이 감액된 2,26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긴축재정으로 매년 일정비율 강제 삭감 편성하고 있어 자칫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및 감소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당초 97억원규모에서 다소 큰 폭인 14.9% 14억원이 증가한 11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 증가한 연구개발비는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구간 타당성 검토용역' 4억 5천만원(예산서안 p839)과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GB훼손지 복구지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GB훼손지 공원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서안 p895) 각각 9천만원, 3천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8억원(예산서안 p819) 등은 신규 편성되었는데,

- 용역비의 경우 매년 과다편성, 용역결과 활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바, 용역실시를 위한 계획단계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판단을 위해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물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26,017	232,444	△6,427	△2.8
일 반 운 영 비		108,219	115,315	△7,095	△6.2
여 비		6,015	6,368	△352	△5.5
업 무 추 진 비		3,542	3,888	△346	△8.9
직 무 수 행 경 비		21,524	21,218	306	1.4
의 회 비		2,904	3,040	△135	△4.4
재 료 비		70,694	70,868	△174	△0.2
연 구 개 발 비		13,117	11,748	1,369	11.7
연 구 용 역 비		11,141	9,698	1,443	14.9
전 산 개 발 비		532	515	17	3.3
시 험 연 구 비		1,445	1,535	△90	△5.9

3) 경상이전

- 인천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이전은 당초 3조 4,258 억원에서 3.8% 1,303억원이 증가한 3조 5,56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간이전 506억원, 자치단체등이전 728억원 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경상이전 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556,175	3,425,848	130,328	3.8
일 반 보 상 금	67,255	66,125	1,130	1.7
이주및재해보상금	1	13	△12	△91.5
포 상 금	19,272	19,813	△541	△2.7
연 금 부 담 금 등	67,875	66,471	1,404	2.1
배 상 금 등	926	371	555	149.5
출 연 금	197,385	188,063	9,322	5.0
민 간 이 전	871,224	820,653	50,570	6.2
자 치 단 체 등 이 전	2,182,897	2,110,117	72,780	3.4
전 출 금	14,532	13,404	1,129	8.4
국 외 이 전	7,507	7,866	△359	△4.6
차입금이자상환	127,301	132,951	△5,649	△4.2

- 민간이전 경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300억원, 버스업체 환승무료·할인 재정보조금 30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0억원 등으로 당초 편성액²⁷⁾ 927억원에서 1,357억원으로 46.4% 4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²⁷⁾ 주요 증감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927억원 → 1,357억원(46.4% 430억원 증)

- ▶ 준공영제 재정지원 400억원 → 700억원(75.0% 300억원 증)
- ▶ 버스업체 재정보조금(환승무료·할인) 141억원 → 171억원(21.3% 30억원 증)
- ▶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386억원 → 486억원(25.9% 100억원 증)

- 버스업체, 서울·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5%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전액 편성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자본지출

- 시재정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건설경기 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자본지출비는 다소 큰 규모인 1,160 억원이 감소하여 1조 8,22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자본지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822,553	1,938,513	△115,960	△6.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1,139,573	1,281,902	△142,330	△11.1
민 간 자 본 이 전	44,534	47,674	△3,140	△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7,148	446,115	61,033	13.7
공기업자본전출금	52,931	91,871	△38,941	△42.4
자 산 취 득 비	44,469	37,495	6,975	18.6
기 타 자 본 이 전	33,899	33,456	443	1.3

-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의 자본지출의 감액규모보다 큰 1,423억원이 감소시킨 시설비및부대비는 시 재정악화로 인해 대규모 건설사업들의 사업시기 연기 및 절감 편성으로 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선투자도 일정 부분 필요한 바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당초 4,461억원에서 13.7% 610억원이 증가된 5,07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772억원(예산서안 p673)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의 경우 상당부분 중단하거나 사업시기를 연기하고 있고,
- 또한 8개구 13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예산서안 p670)도 90% 넘는 사업비가 조정되는 등 시의 재정악화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백억원의 재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있어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반면 공기업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액 918억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Delta 42.4\%$ 389억원이 감액된 52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Delta 293$ 억원
 - ▶ 일반회계(예산서안 p221) \Rightarrow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예산서안 p26)
 - Tomorrow City 수익부지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 $\Delta 123$ 억원
 - ▶ 일반회계(예산서안 p613) \Rightarrow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2011년 미수금)

- 일반회계에서 416억원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세출예산에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용지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미전출금이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용자및출자

- 용자 및 출자 부분은 기정액이 858억원에서 2배가 넘는 237.0% 2,033억원이 증가한 2,89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하는 출자금은 당초 편성액보다 66억원이 감소한 492억원인 반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은 당초 300억원보다 7배에 가까운 2,099억원이 증가되어 2,39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용자 및 출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89,139	85,794	203,345	237.0
용	자	239,928	30,000	209,928	699.8
출	자	49,211	55,794	△6,583	△11.8

- 용자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부터의 용자금 2,060억원²⁸⁾이 증가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음

28)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용자금 사업(예산서안 p29)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17억원	·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600억원
·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299억원	·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	300억원
·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	117억원	· 도시철도 2호선	627억원

- 이중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 300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627억원 등은 당초 금융기관채 매입과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려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를 통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줄인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금의 용자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경계해야 하는 바, 용자금 사업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 1,297억원에서 배에 가까운 92.0% 1,193억원이 증가되어 2,489억원으로 편성됨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48,935	129,680	119,255	92.0
	예비비	174,721	127,758	46,963	36.8
	반환금기타	74,214	1,922	72,292	3761.7

- 예비비는 당초보다 470억원이 증가된 1,74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는 당초 550억원에서 △55.4% 305억원이 감액된 246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47억원 발생으로 예비비가 365억원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채권매출 증가(656억원)와 더불어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1,153억원)의 과다발생으로 예비비가 360억원 증가함에 따라 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증가하였음

- 한편 반환금기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7억원 증가하였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예산서안 p39)이 591억원이 신규로 발행하여 대폭 증액되었음
- 이는 2012년부터 시작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분양율(현약 40% 수준) 저조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자와의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 중도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계약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예산서안 p23) 312억원을 택지판매수익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임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심각한 투자 위축 및 더딘 경제회복으로 재미동포타운의 분양율 저조 및 투자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시의 직접 참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 사업들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²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바, 대폭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증액편성인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시의 재정 여건으로 조정되거나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증액 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한편 최근 사업 재구조화³⁰⁾로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민자터널 MRG(최소수입보장)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추경에 58억원(예산서안 p659)이 증액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오류를 지난 10여년간 확인하지 못하고 답습만 하는 행태로 일관하여 1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던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내역 현황

- ▶ 추경예산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21쪽 ~ 132쪽) 참조

²⁹⁾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³⁰⁾ 민자터널 사업 재구조화 : 원적산·만월산터널은 사업 재구조화 및 변경협약 체결완료(2014.4.29)로 잔여 운영기간(21년간) 당초 협약의 57%(3,495억원) 절감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주요 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10억원이상 증감사업)

소관실과	사 업 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쪽)
교육기획관실	교육청 법정전출금	462,288	441,413	20,875	201
"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1,000	2,000	△1,000	202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1,620	2,920	△1,300	202
"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3,800	0	3,800	204
예산담당관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3,550	17,400	6,150	220
"	재정보전금	9,835	8,259	1,576	220
"	조정교부금	453,508	417,271	36,237	220
"	예비비	24,567	55,040	△30,473	220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000	64,290	△29,590	221
"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595	1,602	24,993	224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9,171	31,803	△2,632	224
총 무 과	연금부담금	33,627	31,265	2,363	242
"	퇴직수당부담금	10,933	12,254	△1,320	242
자치행정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위탁금 및 군구위탁금	10,121	14,558	△4,437	243
세 정 과	시세징수교부금	43,319	46,718	△3,399	261
사회복지봉사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714	7,573	2,141	35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9,273	20,832	△1,559	361
보건정책과	의료원 기능 강화	2,060	3,984	△1,924	371
"	필수예방접종사업지원	16,775	11,088	5,687	375
"	기타회계전출금	56,976	52,905	4,071	385
보육정책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2,195	9,640	2,555	401
"	보육료 국비 부담분 증액분	12,223	0	12,223	402
"	13년 보육료 미지원분	6,956	0	6,956	402
"	무상보육 추진	85,882	70,709	15,173	402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470	2,446	1,024	402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10억원이상 증감사업)

소관실과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쪽)
보육정책과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5,920	8,000	△2,080	405
노인정책과	노인요양시설 운용(등급자)	23,813	21,822	1,991	423
미래창조경제 정책관실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	18,344	20,389	△2,045	528
"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580	0	1,580	53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31,503	29,504	1,999	539
농축산유통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960	51,852	△50,892	564
"	배수개선	4,500	3,500	1,000	566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216	6,716	△4,500	566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007	4,250	△1,244	566
"	한밭대비 용수개발	1,400	0	1,400	567
교통기획과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	29,501	35,000	△5,499	640
대중교통과	택시 유류대 보조	28,028	30,036	△2,008	642
"	기타회계 전출금	121,949	183,980	△62,030	645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70,000	40,000	30,000	646
"	버스업체 재정보조(환승무료·할인)	17,098	14,098	3,000	647
"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재정지원)	48,647	38,647	10,000	648
교통관리과	주차장 건설사업(보통세 1%범위내) 지원	686	2,686	△2,000	651
도로과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3,072	12,200	△9,128	655
"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1,701	4,966	△3,265	655
"	검단사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500	14,316	△13,816	656
"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500	5,010	△4,510	656
"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500	8,510	△8,010	656
"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700	3,000	△2,300	656
"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155	0	1,155	656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10억원이상 증감사업)

소관실과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쪽)
문화예술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0	1,000	1,000	427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2,101	3,168	△1,067	454
"	체육시설 위탁관리	37,806	39,171	△1,365	457
"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2,000	0	2,000	463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1,000	0	1,000	464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운영	2,600	0	2,600	464
도시계획과	반환공여구역등 주변지역개발사업	31,500	42,932	△11,432	662
지역개발과	인천-부천간도로(2공구) 방음벽설치	18,600	2,690	△2,671	666
주거환경정책실	동구 배다리	0	1,394	△1,394	670
"	남구 석정마을	0	2,651	△2,651	670
"	연수구 청능마을구역	0	1,407	△1,407	670
"	연수구 농원마을구역	0	3,395	△3,395	670
"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주변	0	1,881	△1,881	670
"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구역	0	3,677	△3,677	670
"	부평구 부평고교 주변구역	0	3,164	△3,164	670
"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0	3,249	△3,249	670
주거환경정책실	서구 가정여중주변구역	0	2,822	△2,822	670
"	서구 신현동회화나무골구역	0	4,275	△4,275	670
도시재생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2,000	4,000	△2,000	672
"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6,000	8,000	△2,000	673
"	승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77,240	0	77,240	673
대기보전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622	15,622	△5,000	581
자원순환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3,344	2,300	1,044	586
수질환경과	운연천 정비개선사업	2,620	0	2,620	589
해양도서정책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50	0	1,050	686
U - City 과	Tomorrow City 회계관 재산이관 전출금	0	12,306	△12,306	613

□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10억원이상 증감사업)

회계명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쪽)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1,500	8,400	3,100	734
도시교통사업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293	0	6,293	819
"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보조사업)	686	2,686	△2,000	822
아시아경기대회	2014 장애인 AG 조직위 출연금	9,800	5,400	4,400	892
"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10,959	16,651	△5,692	894
"	매소홀로 도로개설	2,835	1,735	1,100	895
"	주경기장 건설 토지매입비	7,000	69,189	△62,189	897
"	주경기장 건설 공사비	50,338	36,996	13,342	897

□공기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10억원이상 증감사업)

회계명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쪽)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34,152	30,000	204,152	29-30
경제자유구역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59,129	0	59,129	39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356	0	1,365	64
"	청라투지유치 BL2 농어촌공사 부지매입	6,062	0	6,062	112
"	송도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	1,000	0	1,000	112
"	송도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	783	2,145	△1,362	114
"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32,200	128,200	4,000	115
"	엠코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2,000	3,463	△1,463	115
"	송도6·8공구 기반시설 8-2공구 건설공사	28,080	30,060	△1,980	115
"	송도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36,000	35,000	1,000	115
"	송도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12,035	9,001	3,034	116
"	송도6·8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	500	1,800	△1,300	116
"	청라교외형 쇼핑물 주변 기반시설사업	1,247	270	977	117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지원	2,076	5,251	△3,175	82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13,700	4,450	9,250	183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0	1,070	△1,070	198

마.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 주요사업

- 추경예산편성은 중요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 당초 본예산 편성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원이 배분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반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에 대한 의결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고, 또한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 의무절감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 예산사업 현황

▶ 추경예산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133쪽 ~ 240쪽) 참조

<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5억원이상 전액삭감사업)

회계별	소관실과	사업명	추경예산액	예산안
일반회계	국제협력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800	211
"	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	△862	401
"	문화예술과	검암도서관 건립 지원	△500	433
"	수질환경과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500	589
"	U - C i t y 과	Tomorrow City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	△12,306	613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사업	△2,000	822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부평~남동정수장간 도수관로 신설공사	△500	183
"	"	상수도자재관리창고 리모델링공사	△657	191

〈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5억원이상 신규사업)

회계별	소관실과	사업명	추경예산액	예산안(쪽)
일반회계	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지원	907	202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580	530
"	농축산유통과	한발대비용수시설(성립전)	1,400	567
"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700	254
"	보건정책과	치매예방관리	580	383
"	보육정책과	보육료 국비 부담분 증액분	12,223	402
"	"	13년 보육료 미지원분	6,956	402
"	교통기획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545	640
"	대중교통과	도시철도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500	644
"	도로과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도로개설	1,155	657
"	문화예술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500	426
"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00	427
"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810	432
"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502	436
"	관광진흥과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800	451
"	체육진흥과	2014 황해국제 요트경기대회	500	460
"	"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2,000	463
"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464
"	"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운영	2,600	464
"	"	반환금 기타	552	467
"	도시재생과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77,240	673
"	건축계획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49	675
"	건축계획과	전세임대사업	688	676
"	"	주거급여 시범사업	1,902	677
"	수질환경과	운연천 환경정비 개선사업	2,620	589
"	하수과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	607	592
"	"	노후 하수관거 정비	2,650	592
"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	950	597
"	해양도서정책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50	686
"	소방행정과	소방장비 보강	1,480	269

〈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5원이상 신규사업)

회계별	소관실과	사업명	추경예산액	예산안 (쪽)
기타특별회계	도 시 교 통 사 업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800	818
"	"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293	819
"	도 시 개 발	장기동 도시계획시설(체육) 철치	1,517	869
"	"	서운2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900	869
"	아시아경기대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656	896
"	구 획 정 리 사 업	검단1지구 환지청산	2,900	756
"	"	원당지구 환지청산	5,000	770
"	"	블로지구 환지청산	720	798
공기업특별회계	하 수 도 사 업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2,500	45
"	경제자유구역사업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59,129	39
"	"	인천IP재산 채무인수에 따른 스트리트몰 금융비용 부담금	542	108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356	64
"	"	청라투자유치 BL2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	6,062	112
"	"	송도자율형 사립고 건립비 지원	1,000	112
"	"	외국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1,500	69
"	"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754	73
"	"	송도 6·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021	73
"	"	BRC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789	74
"	"	부당이득금 반환금	572	73

바. 계속비 사업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8건, 공기업특별회계 11건, 기타특별회계 6건으로 총 35건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4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 등 총 5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집행액, 연차별투자계획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액,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됨.
- 또한,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4년도 당초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완료, 공사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사업 계획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현황

- ▶ 추경예산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241쪽 ~ 260쪽) 참조

< 계속비사업 변경사업 주요현황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 계획액		'15년도 예산액	변경사유	예산안 (쪽)
		당초	변경			
인천가족공원 조성(2단계)	49,830	7,980	7,877	7,730	집행액 및 투자 계획 변경	711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33,341	6,941	6,927	-	총사업비 변경	711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5,995	5,192	5,180	-	총사업비 및 투 자계획 변경	711
북향고가차도 건설	24,082	8,006	8,688	-	총사업비 및 투 자계획 변경	711
검단우회도로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66,762	5,979	2,714	-	총사업비 및 투 자계획 변경	711
검단산업단지 ~ 검단우회도 로간 도로확장	43,300	14,316	500	23,816	투자계획 변경	711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 로개설	41,100	5,010	500	14,510	투자계획 변경	711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 차도 건설	27,100	8,510	500	18,010	투자계획 변경	711
부평동 ~ 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35,040	3,000	700	5,300	투자계획 변경	711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25,500	12,200	3,072	3,000	투자계획 변경	711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606,500	42,932	31,500	45,000	투자계획 변경	711
2020도시 관리계획 정비용 역	1,108	430	158	-	총사업비 및 투 자계획 변경	711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401,230	69,905	69,905	-	집행액 변경	712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 립	306,000	52,113	1,220	108,923	총사업비 및 투 자계획 변경	712
청라지구 ~ 북항간 도로개 설	28,000	-	1,155	59	신규	712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중 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0,291	-	4,758	3,533	신규	712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9,100	-	1,521	10,000	신규	712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8,687	-	1,000	6,300	신규	712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 계획액		'15년도 예산액	비 고 (변경내역)	예산안 (쪽)
		당초	변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15,115	5,556	3,071	-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181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 축공사	73,005	7,300	7,300	44,157	집행계획 변경	131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	5,783	2,145	783	1,500	집행계획 변경	131
송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	1,109	412	209	360	집행계획 변경	131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95,404	129,484	133,484	156,881	집행계획 변경	131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93,000	36,300	38,300	36,413	집행계획 변경	131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2공구 건설공사	67,600	30,710	28,730	36,020	집행계획 변경	131
엠코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6,944	3,472	2,009	4,935	집행계획 변경	131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49,200	1,894	594	11,300	집행계획 변경	132
송도하수제이용 2단계 사업	28,100	9,736	12,770	5,000	집행계획 변경	132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 시설사업	10,130	-	1,270	5,000	신규	132

□ 기타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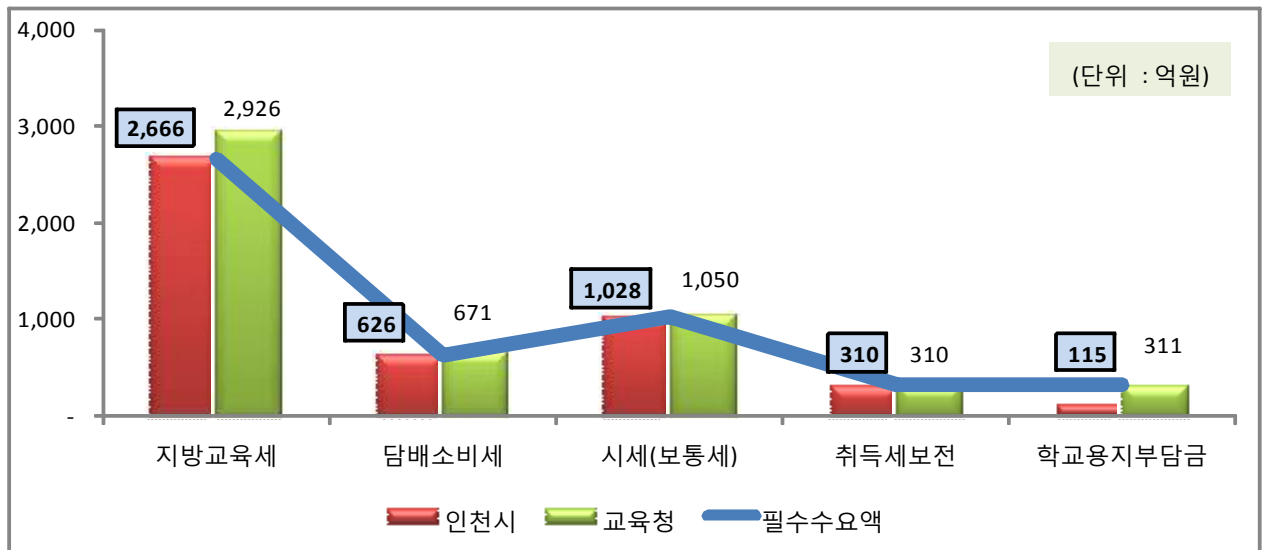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 계획액		'15년도 예산액	비 고 (변경내역)	예산안 (쪽)
		당초	변경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1,123	-	2,900	-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759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41,694	-	5,000	-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773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5,683	31,258	31,513	-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787
블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6,282	10	730	-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801
남동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22,947	-	6,293	7,309	투자계획 변경	827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건설	460,280	14,800	14,800	83,876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	859

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³¹⁾」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³²⁾」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명목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음
-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중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시에서는 전액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2~9%에 가까운 337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63% 19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인천시와 교육청간 533억원의 전출·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차액발생 현황>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3. 광역시세(목적세 제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4항³³⁾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³⁴⁾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어
- 시와 교육청간의 법정 전출·입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533억원이라는 세수가 결손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차액발생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차액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기준	세입예산 추정액 (A)	시			교육청		
			전출액 (B)	차액 (B-A)	비율	전입액 (C)	차액 (B-C)	비율
총 계		473,057	473,457	△19,600	△4.0	526,733	△53,276	△10.1
지방교육세	전액	266,590	266,590	0	0.0	292,618	△26,028	△8.9
담배소비세	45/100	61,598	61,598	0	0.0	67,054	△5,456	△8.1
시 세	보통세 5/100	102,811	102,811	0	0.0	105,003	△2,192	△2.1
취 득 세 감면보전분	'11~'12 년분	30,958	30,958	0	0.0	30,958	0	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³⁵⁾	협약 및 요청	31,100	11,500	△19,600	△63.0	31,100	△19,600	△63.0

※ 시의 차액은 필수소요액 대비 차액 / 교육청 차액은 시전출금 대비 차액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35) 학교용지부담금 필수액 31,100백만원 내역 : 당해연도 6,460백만원 + 지난년도 24,640백만원

아.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³⁶⁾」 및 「지방재정법³⁷⁾」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은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인 5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무려 △55.4% 305억원이 감소한 24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이는 안전행정부령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의 절반 수준인 0.5%에 불과한 실정임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제외)	4,976,194	4,985,903	△9,709	△0.2
예 비 비 (편성비율)	24,567 (0.5)	55,040 (1.1)	△30,473	△55.4

36)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7)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금면 추경에 시의 재정 총규모는 4.4%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 증가에 그치고 있고 자치하고 있는 비중도 0.4%에 불과한 실정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예 산 총 규 모	8,179,286	7,837,282	342,013	4.4
공공질서 및 안전 (구성비율)	31,732 0.4	31,417 0.4	315	1.0

- 또한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³⁸⁾’과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³⁹⁾’의 법정 적립률이 각각 23.7%(1,972억원중 467억원)와 59.5%(529억원중 315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추경에도 176억원을 편성해야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5억원만 금면 추경에 계상하고 있음
- 최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E등급) 118곳중 47%인 55곳이 인천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재난 및 안전분야의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 기금 조성도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예비비라도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제15호(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검토

1. 현실태

-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월 현재 금년내 매각으로 수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대 985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금년내 매각가능액 985억원과 보상금 314억원을 합해도 당초 예산액의 17.5%에 불과한 실정으로 4,629억원 규모의 세입부족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금년수입 가능액	세입부족	비고
계	5,614	985 (17.5%)	△ 4,629 (82.5%)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35억) 및 기타 시유재산 매각수입(338억 ⁴⁰⁾)	373	373	-	회계과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 매각	1,139	-	△ 1,139	회계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3,100	612	△ 2,488	농축산유통과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	256	-	△ 256	도로과
북항기부채납 준공업용지 매각	746	-	△ 746	도시계획과

40) 기타 시유재산 매각수입 338억원중 2014.7월 현재 24억원 매각 완료

-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32필지 41억원
- 소래·논현구역 10,769㎡ (약 3,262평) 197억원
- 도시개발 사업등 손실보상 및 기타 재정매각 100억원

2. 매각 대상별 현황 및 검토

가. 북항배후부지 매각 관련

1) 상업용지(회계과 관리)

- 토지현황 : 서구 원창동 56,366.6㎡(약 17,051평)
- 세입예산 : 1,139억원[감정평가 : '13.7월 / 1,139억원]

2) 준공업용지(도시계획과 관리)

- 토지현황 : 서구 원창동 75,952.3㎡(약 22,975평)
- 세입예산 : 746억원[감정평가 : '14.8월 / 837억원]

3) 현실태

- 한진중공업으로부터 2013. 1월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위해 2회에 걸쳐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

4) 그간 추진 경과

- 매수자의 부지 활용을 고려하여 상업용지와 준공업 용지를 함께 매각하는 방안 추진
-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용도, 밀도, 획지계획 변경 등을 완화하는 등 매입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5) 매각 불투명 사유

-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적음
- 매수자가 토지를 매입한다 해도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당장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

6) 검토의견

- 상업용지와 준공업용지의 토지 관리관이 각각 회계과와 도시계획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을 위해 관리 일원화방안 적극 검토
- 소방청사로 활용코자 매각제외한 부지에 대해 조속히 청사 신축 추진 등을 통해 매각대상 부지 주변 정비로 상업용지로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 매각제외분 활용계획 >

- 활용계획 : 소방청사(신현119안전센터) 신축
- 소재지 : 서구 원창동 391-11번지
- 규모 : 1,485.9㎡(약 449평)

- 추가로 공공용지 활용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기 확충 및 타 시설물 유치로 투자 유인책 강구 필요

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관련

가)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3,188㎡(약 52,389평)
 - 연면적 : 79,080㎡(약 23,922평), 지하 1층 ~ 지상 5층
- 주요시설 : 경매시설, 중도매인점포, 직판·편의·주차시설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7.12월
- 사 업 비 : 3,060억원(시비)
- 사업방식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건축) 매각비용 활용

2) 추진경과

- 2012. 6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변경 계획 수립
- 2013. 10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방침 결정 및 용도폐지
- 2014. 3 : 투자약정서 체결(인천광역시 ↔ 롯데쇼핑)
- 2014. 5 : GB해제 사전설명 등(국토부 사전협의 16차)
- 2014. 5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 제출(시 → 국토부)

3) 향후계획

- 2014. 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준주거지역, 시장)
- 2015. ~ : 실시계획인가, 설계 등 사업 추진

4) 매각 지연 사유

○ 이전부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지연('14.6월)

- ▶ 인천시 :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남촌동 시장부지를 GB로 묶을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신속한 해제 요청
- ▶ 국토교통부 : GB지역의 한 가운데에 시장 부지가 있다 보니 해제할 경우 나머지 지역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해제 불가

○ 부지·건물 매입 본계약 체결시한 연장('14.6월)

- ▶ 롯데쇼핑 : GB해제 해결될 때까지 계약체결 시한 연장 요청
- ▶ 인천시 : 투자약정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6.30일에서 9.30일로 3개월 연장

○ 도매시장 규모 관련 국토부 승인 지연('14.7월)

- ▶ 인천시 : 도시 팽창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보다 3배가량 큰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적정
- ▶ 국토교통부 : 작은 규모로 보완

※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규모

· 부지 : 60,809.87㎡(약 18,395평) · 건물 : 44,101.8㎡(13,340평)

5) 검토의견

○ 이전부지에 대한 GB해제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논리 개발로 관계기관 적극 설득 필요

⇒ 논현택지, 서창지구 개발 등 주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GB로써의 보존가치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시흥,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에서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인접한 고속도로IC를 통한 주변도시들과의 유통망이 갖춰진 최적지

○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 협소와 시설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 및 시장기능 저하 등 현 상황 적극 호소

- ⇒ 기존 시장의 경우 터미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있으나 1일 이용인원이 29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주차장 수용규모는 713대에 불과한 반면 출입차량은 1일 14배가 넘는 1만대에 달하는 등 부지 협소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 있음
- ⇒ 이와 더불어 시장이 개장된지 20년이 넘어 시설노후화로 인해 이용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먹거리인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임에도 악취는 물론 농산물 보관장소 협소로 인한 비위생적 적치 등 농산물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 저하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현황 >

- 부 지 : 60,809.87㎡(약 18,395평)
- 건 물 : 44,101.8㎡(13,340평)
- 개 장 : 1994. 01. 11 (과일 2000. 11. 29)
- 취급능력 : 1,000톤/일 (야채, 과일 각각 500)
- 주 차 장 : 713대
- 이용인원 : 29,200명/1일
- 출입차량 : 10,158대/1일

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매각 관련

1) 토지 현황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739-1외 2필지 25,583.5㎡(약 7,739평)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0,991.3㎡ / 약 6,350평) : 연립주택용지
 - 준주거지역(4,592.2㎡ / 약 1,389평) : 근생용지
- 재산가액 : 256억원(공시지가 기준)

2) 현실태

- (주)한화·(주)화인파트너스로부터 기부채납(2014.3월) 받은 토지로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임
- ※ 2014.9.2일 매각에 따른 낙찰자 결정 예정(예정가격 261억원)

3) 검토의견

- 연립주택용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연립주택의 인기 하락으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용도지역 변경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각도의 방안 마련 필요
- 근생용지의 경우 논현택지 외곽지역으로 근생용지로써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인접 시유지 및 구유지와 공동마케팅뿐만 아니라 투자 유인책 개발 필요

< 근생용지 인접 토지 현황 >

- 시유지 : 논현동 764-4(10,776.8㎡ / 약 3,260평)
- 구유지 : 논현동 764-3(4,157.5㎡ / 약 1,258평)

붙임 2

송도 6·8공구 매각(토지 리턴제) 관련 검토

1. 토지 현황

- 위치 : 송도동 308-1외 2필지
- 면적 : 347,036.6m²(약 104,978평)
- 금액 : 8,520억원(m²당 2,488천원 / 평당 8,116천원)

2. 추진현황

- 2012. 4. 25 : 회계간 재산이관(경제청 특별회계 → 일반회계)
- 2012.8.1 ~ 8.20 : 송도 6·8공구 처분방안 제안 공모
- 2012. 9. 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교보증권,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 토지리턴제⁴¹⁾)
- 2012. 9. 7 :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 수취(8,094억원, 95% 선납)
※ 잔금 426억원 납기 미도래 : 2015.9.7

< 매매계약 주요내용 >

- 토지대금 총 8,520억원 중 계약금(10%) 852억원과 중도금 및 잔금일부(85%) 7,242억원을 2012.9.7일 납부
- 잔금(5%) 426억원의 납부시기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2년 연장가능)
- 계약후 3년(또는 5년) 환불 요구시 상호 합의하에 결정
- 소유권이전시 토지 감정평가 실시후 토지매매가보다 증가시 100% 전액납부
- 개발이익의 19% 인천시에 제공
- 소유권이전에 따른 매매종료시 인천시는 금융비용(이자) 미 부담

41) 토지리턴제 : 토지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으로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3. 현실태

○ 토지리턴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문제

- 교보증권이 토지리턴을 하지 않도록 미리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개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송도 6·8공구 기반시설비로 2014년에만 823억원⁴²⁾이 편성되었고 2016년까지 총 2,483억원을 투입해야함. 기반시설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9-13%)도 해야함

⇒ 기반시설을 했는데도 교보증권이 토지리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 경우 시가 기반시설비만큼 부담만 커질 수 있음

○ 경제청으로 관리권 이관 문제

-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권을 경제청으로 이관하여 경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제청으로 관리권을 넘겨 교보증권과 협의토록 추진하는 방안 논의중

(2014.7.8 : 제21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시 논의)

< 토지 리턴 권한 행사시 >

· 시기 : 2015. 8. 7(2년 연장 가능)

· 환불 : 약 9,050억원

= 기 수취한 계약금·중도금 8,094억원(계약금 852+중도금 7,242)

+ 중도금(7,242억)의 연이율 4.4% 이자(3년치 약 956억원)

※ 교보증권에서는 토지리턴 기한을 2년 연장할지 리턴 권한을 바로 행사할지 결정 할 수 있음

42)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비 823억원중 7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편성

4. 검토의견

-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개발 등에 대한 승인권, 인·허가권을 가진 경제청으로 관리권을 넘겨 교보증권과의 대화 창구가 단일화되게 신속히 소유 및 관리권을 일원화 하는 방안 강구
- 송도 6·8공구의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 기반시설 건설은 교보증권과 수시로 협의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한 공구부터 추진하는 방안 등 강구

1. 중점 심사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전국 및 인천의 출산율 증가율 현황, 연간 지원대상 및 장려금 지원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 산모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무엇인지 및 최근 노산이 많은데 노산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회계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을 재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바람
- 취득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는 증가했음에도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및 지방소비세 보전분 삭감 사유
- 송도 6·8공구 토지리턴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사업진척도 및 토지가 리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체납액 정리가 부진한 사유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북항배후부지 매각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전문 부동산 매각팀 활용 등 방법을 찾기 바람
-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는 지양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전액 반영하기 바람
-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의 사업주체, 사업내용, 매칭비율 및 시비 미부담 사유는 무엇인지
- 미추홀 산타 지원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사유, 지원대상, 유사 사업

은 없는지 및 사업 내용상 일반기업체나 개인들이 하고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련 13개 사업중 10개 구역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정부분 살여야 하는게 아닌지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MRG관련 문학터널과의 소송 진행 상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삭감사유와 농산물 구매방법 및 생산자와 유통업자간의 입찰가격 차이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 북항배후부지 관리부서가 회계과와 도시계획과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 매각이 유찰되고 있는 바, 효과적인 매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람
-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재산세 감면은 시 조례로 감면하는 방안 강구
- 택시유류대 보조금 지원방식 및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따른 운행사항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를 낳는 여성들을 위한 격려금의 성격도 있는 바 사업을 시행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더 시행후 사업평가를 해주기 바람
- 시청 소속 장기교육생들의 해외연수관련 여비가 금년에 미편성된 반면, 구청 소속 직원들의 여비는 편성되어 형평성 및 교육효과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월미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바다를 보기 위해 찾는 인천의 관광명소중 하나인바,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금번 추경에 시와 교육청간 전출입 예산이 540여억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유와 대책 및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토론요지

- 1) 찬성 : 없음
- 2) 반대 : 황인성, 최석정, 조계자, 김정현, 박종우, 손철운,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허 준 위원

3.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10명)

3-1.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8,179,294,579	0	50,000	8,179,344,579
일 반 회 계	5,242,783,530	0	50,000	5,242,833,530
특 별 회 계	2,936,511,049	0	0	2,936,511,04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614,023,276	0	0	1,614,023,276
상 수 도 사 업	325,462,440	0	0	325,462,440
하 수 도 사 업	202,957,964	0	0	202,957,964
경 제 자 유 구 역	638,720,580	0	0	638,720,580
지 역 개 발 기 금	446,882,292	0	0	446,882,292
기 타 특 별 회 계	1,322,487,773	0	0	1,322,487,773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2,343,072	0	0	12,343,072
의 료 급 여 기 금	286,460,495	0	0	286,460,495
검 토 단 1 지 구 획 정 리 사 업	2,900,000	0	0	2,900,000
검 토 단 2 지 구 획 정 리 사 업	209,690	0	0	209,690
원 토 당 지 구 획 정 리 사 업	5,000,000	0	0	5,000,000
오 류 지 구 획 정 리 사 업	33,241,028	0	0	33,241,028
마 전 지 구 획 정 리 사 업	4,015,750	0	0	4,015,750
불 로 지 구 획 정 리 사 업	794,138	0	0	794,138
도 시 교 통 사 업	43,155,156	0	0	43,155,156
광 역 교 통 시 설	57,552,504	0	0	57,552,504
도 시 철 도 사 업	473,461,454	0	0	473,461,454
도 시 개 발	11,580,000	0	0	11,580,0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128,000	0	0	128,000
기 반 시 설	2,140,000	0	0	2,140,000
지 하 도 상 가	12,306,896	0	0	12,306,896
아 시 아 경 기 대 회	377,199,590	0	0	377,199,590

3-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8,179,294,579	△ 4,627,439	4,677,439	8,179,344,579
일 반 회 계	5,242,783,530	△ 3,502,439	3,552,439	5,242,833,530
특 별 회 계	2,936,511,049	△ 1,125,000	1,125,000	2,936,511,04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614,023,276	△ 225,000	225,000	1,614,023,276
상 수 도 사 업	325,462,440	0	0	325,462,440
하 수 도 사 업	202,957,964	0	0	202,957,964
경 제 자 유 구 역	638,720,580	△ 225,000	225,000	638,720,580
지 역 개 발 기 금	446,882,292	0	0	446,882,292
기 타 특 별 회 계	1,322,487,773	△ 900,000	900,000	1,322,487,773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2,343,072	0	0	12,343,072
의 료 급 여 기 금	286,460,495	0	0	286,460,495
검 토 지 구 획 ¹ 정 리 사 업	2,900,000	0	0	2,900,000
검 토 지 구 획 ² 정 리 사 업	209,690	0	0	209,690
원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5,000,000	0	0	5,000,000
오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33,241,028	0	0	33,241,028
마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4,015,750	0	0	4,015,750
불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794,138	0	0	794,138
도 시 교 통 사 업	43,155,156	0	0	43,155,156
광 역 교 통 시 설	57,552,504	0	0	57,552,504
도 시 철 도 사 업	473,461,454	0	0	473,461,454
도 시 개 발	11,580,000	△ 90,000	90,000	11,580,0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128,000	0	0	128,000
기 반 시 설	2,140,000	0	0	2,140,000
지 하 도 상 가	12,306,896	0	0	12,306,896
아 시 아 경 기 대 회	377,199,590	0	0	377,199,590

3-3.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8,179,294,579	0	50,000	8,179,344,579
일 반 회 계	5,242,783,530	0	50,000	5,242,833,530
환 경 녹 지 국				
2014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국고보조금)	0	0	50,000	50,000
특 별 회 계	2,936,511,049	0	0	2,936,511,04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614,023,276	0	0	1,614,023,276
기 타 특 별 회 계	1,322,487,773	0	0	1,322,487,773

3-4.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8,179,294,579	△ 4,627,439	4,677,439	8,179,344,579
일 반 회 계	5,242,783,530	△ 3,502,439	3,552,439	5,242,833,530
기 획 관 리 실	891,821,002	△ 2,876,939	0	888,944,063
예비비	24,566,567	△ 2,876,939	0	21,689,628
소 방 안 전 본 부	171,419,340	△ 126,000	126,000	171,419,340
UNISDR 임차료	54,000	0	126,000	180,000
UNISDR 분담금	0	△ 126,000	0	△ 126,000
보 건 복 지 국	602,495,657	390,839	0	602,886,496
사 회 복 지 시 설 입 소 자 건강 검진	0	0	55,000	55,000
장 애 인 가 족 지 원 센 터 운영	678,352	0	40,000	718,352
병 원 선 운영	350,000	0	80,000	430,000
의 료 급 여 환 자 진 료 비 차액 보 존	1,524,844	0	215,839	1,740,683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여성가족국	1,054,203,961	0	1,527,000	1,055,730,961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5,920,000	0	1,040,000	6,960,000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413,000	0	487,000	6,900,000
문화관광체육국	199,803,382	0	502,600	200,305,982
미추홀산타 지원	0	0	80,000	80,000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469,692	0	300,000	769,692
작은 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502,135	0	107,600	609,735
교양강좌 운영(보상금)	15,000	0	15,000	30,000
경제수도추진본부	227,207,338	△275,000	275,000	227,207,338
로봇랜드 조성사업지원	28,875,000	△275,000	0	28,600,000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	0	0	100,000	100,000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 사업	0	0	175,000	175,000
환경복지국	204,012,664	△224,500	224,500	204,012,664
송도자원회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	14,303,285	△224,500	0	14,078,785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인솔공무원 여비	400	0	500	900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0	0	100,000	100,000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유지비	175,500	0	19,500	195,000
2014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0	0	100,000	100,000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0	0	4,500	4,500
도시계획국	208,681,471	0	245,000	208,926,471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0	0	245,000	245,00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항만공항해양국	195,089,759	0	261,500	195,351,259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운영 지원	96,000	0	24,000	120,000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477,500	0	222,500	700,000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	0	0	15,000	15,000
특 별 회 계	2,936,511,049	△ 1,125,000	1,125,000	2,936,511,04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38,720,580	△ 225,000	225,000	638,720,580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0	0	225,000	225,000
자본예산 예비비	5,688,102	△ 225,000	0	5,463,102
도시개발특별회계	11,580,000	△ 900,000	900,000	11,580,000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900,000	△ 900,000	0	0
예비비	6,975,912	0	900,000	7,875,912

※ 기타 변경사항

○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

-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사업’ 20,000천원을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민간경상보조금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사업’ 20,000천원으로 변경

4.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